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54 발의연월일: 2020. 11. 10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· 이용빈 · 민병덕

진성준 · 서영석 ·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49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2호).

법률 제 호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6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재무상태표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의2(우리사주조합을 통한	제49조의2(우리사주조합을 통한
회사인수에 관한 특례) ① (생	회사인수에 관한 특례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	2
른 회사인수를 위하여 우리사	
주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	
에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차입	
규모 및 차입 기간의 제한에	
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	
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금액의	
합계액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	
사의 자기자본(직전 사업연도	
말 <u>대차대조표</u> 의 자산총액에서	<u>재무상태표</u>
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	
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	
아니 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65조(기금법인의 관리·운영	제65조(기금법인의 관리·운영
서류의 작성 및 보관) 기금법	서류의 작성 및 보관)
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작성하여야 하며, 작성일부터 5	
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 이	

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 성·보관할 수 있다.

- 1. (생 략)
- 2. 대차대조표
- 3. 4. (생략)

- _____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재무상태표
- 3. 4. (현행과 같음)